

문서번호 :

배상금 []지 급 통보
[]미지급

사건번호	배심	년	제	호
신 청 인		대 리 인		

위 배상결정에 대하여 「국가배상법 시행령」 제16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통보합니다.

1. 배상금 지급시

배상결정액	청구인	배상금지급액	지급일자	비고

2. 배상금 미지급시

① 부동산의서접수	② 동의 후 법정기간내 미지급	③ 결정통보일로부터 2개월내 지급미청구	④ 지방자치단체 부동산의

년 월 일

(배상금 지급기관의 장)

직인

○○지구배상심의회 위원장 귀하

작성방법

- 부동산의서 접수시는 ①란에 ○표를 하고 부동산의서 사본 1부 첨부
- 배상금 법정기간내 미지급시는 ②란에 미지급 사유명시
- 2개월내 지급청구가 없을시는 ③란에 ○표
-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동산의시는 ④란에 ○표